## 영업비밀보호의 첫걸음 전사원을 교육하라 요약집

- 산업기술유출사범은 외부자에 비해 기업 내부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전직직원이 60.8%, 현직직원이 19.6%로 전직직원이 대다수이다.
-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분류, 표시를 하지 않거나, 영업비밀 가치가 없거나, 이미 공지되어 있어 보호받지 못하는 기술유출의 단계는 제작, 생성단계의 내용이다.
- 원본증명서: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1. 물리적 관리
  - 2. 기술적 관리
  - 3. 조직적 관리
- 판례에 따를 때, 기술적 관리에 대한 설명 : 네이버주소록으로 작성된 정보는 법인 계정으로 관리하고, 구글 스프레드쉬트로 작성된 정보는 회사 직원들만 초대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
- 비공지성: 정보가 간행물 등 전파매체 등에 의해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일반공중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입, 복사, 대출, 열람 등을 통해 영업비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 영업비밀 보유자의 비밀정보 관리체제나 그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의 것
- 비공지성에 대한 설명
  - 1. 정보의 형성에 오랜 기간이 걸렸거나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었다는 것만으로 영업 비밀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2. 사업자가 특정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당해 사업내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영업비밀성을 상실한다.
  - 3. 이미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 비공지성에 대해 맞는 설명
  - 1.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는 사실상태에 대한 보호이므로 비밀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만 존재한다.
  - 2. 당해 정보가 공개되면 그 공개행위의 주체, 공개자의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비밀성을 상실한다.
  - 3. 기술적 영업비밀의 경우 제 3 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하여 공개해 버린 때에는 공개자 이외의 자가 동일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개 시점부터 비밀성을 상실한다.

- 경제적 유용성 :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은 <u>비밀관리성(유사성)</u>과 관련된 설명이다.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 경제적 유용성 )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 원료배합실에 출입금지표시가 없었고, 원료배합일을 하지 않는 직원들도 원료배합실에 출입이 가능하였다면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근로계약서 : 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사용하는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 등을 비롯한 근로 조건 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
- 근로기준법 제 15 조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영업비밀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여야 한다.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 103 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볼 여지도 있다.
- 비밀유지약정 : 양 당사자가 본 계약(물품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 협의단계에서 영업비밀이나 거래비밀, 기업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우선적으로 협약하는 것
- 비밀유지 약정시 비밀유지 기간은 통상 3년 ~ 5년으로 정하며, 무제한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 업무상 배임죄 : 이 죄의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u>비밀</u>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인증되어야 함
  - 2. 영업비밀로 유지할 필요 없어 관리가 편리
  - 3. 지정, 고시, 공고,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영업비밀의 요건 중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비공지성이라 한다.
- ◆ 2019. 7. 9. 영업비밀보호법의 개정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 <u>비밀로</u> 관리된 으로 바뀌었다.
- ◆ 업체 근무 직원과 비밀서약을 하거나, 지문 인식에 의한 출입 통제와 관련이 깊은 것은 비밀관리성이다.
- ◆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u>객관적</u>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 비공지성은 <u>절대적 비밀성</u>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유자 이외의 특정인이 영업비밀을 알고 있어도 그 자가 보유자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밀 관리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 중 자연스럽게 지득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때에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무엇을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 문서 하단에 비밀표시가 되어 있고, 甲이 00 회사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 ◆ 경제적 유용성 :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업상, 경영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 ◆ 영업비밀 보호법 제 2 조 제 3 호 (가)목 전단에서 언급되는 것으로서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부정한 수단이라 한다.
-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u>비공지성</u>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 ◆ 본드대장 등이 00회사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00회사의 오랜 기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 얻은 성과와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u>경제적 유용성</u>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u>500 만원</u>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 비밀유지 서약의 유효성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 및 <u>직업선택의</u> 자유와의 형평 고려한다.
- ◆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라면, 이를 위반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없으므로 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역시도 기각될 수밖에 없다.
- ◆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그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u>직업 선택의 자유</u>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 대법원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여부를 판단하는데 삼고 있는 기준
  - 1.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
  - 2.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 이익의 존재
  - 3. 지역과 직종, 기간 제한의 합리성
- ◆ 접근 통제 및 개발부서의 분리
  - 1. 기업기밀과 연관된 연구개발 및 생산공정은 장소적 분리 및 보안이 필요하다.
  - 2. 기업정보에 대해서 특정한 자 이외에는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 ◆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하여 회사내부적으로 기업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원들은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신의칙에 따라 기업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 ◆ 전업금지약정 위반시 퇴직금의 30%~ 를 반환한다는 벌칙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 27 조 위약금약정금지에 반하여 무효가 될 소지가 높다.
- ◆ 영업비밀 보호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위하여는 일단 <u>침해행위</u>가 개시되어야 하고, 나아가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알아야 한다.
- ◆ 제 10 조제 1 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 ◆ 방송사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행위를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및 민법 제 750 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 비밀유지성: (판례) 당시 언론계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사전에 쉽게 입수할 수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 ◆ 경제적 유용성 : (판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여도 장래에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 등도 그 유용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제 2 조제 3 호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u>중대한 과실</u>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사용·처분하는 사후행위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만 불법이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되었기 때문에 별죄(別罪)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한다.
- ◆ 업무에 위배하여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u>10년</u>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56 조)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가액(이득액)이 <u>5 억원 이상</u> 50 억원 미만일 경우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가액(이득액)이 <u>50 억원 이상</u>일 경우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한 자는 <u>15년</u>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 침해행위는 15년 이하의 징역 및 15억원 이하의 벌금.
- ◆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대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u>금지</u>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제 10 조 제 1 항)
- ◆ 선의자에 관한 특례 : 영업비밀보호법 제 13 조는 중과실 없이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허용된 범위에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 영업비밀보호법은 2019. 7. 9. 시행되는 법률의 개정으로서 국내침해행위와 외국침해행위 모두 형량을 강화하였다. 국내 침해행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소송절차상 금지청구권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는
- ◆ 오랜 시일이 소요되므로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 전에 또는 이와 동시에 법원에 금지청구권 등의 집행보전을 위해 영업비밀침해행위 <u>금지가처분</u> 신청을 하여 침해행위의 금지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 ◆ 금지 및 예방청구권 :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사용, 공개행위 등을 금지시키는 것(특정한 제품의 생산을 일정기간 중지시키거나, 완성제품의 배포,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 단전, 단수 등)
- ◆ 비공지성 (판시내용): '포렌직 서비스 고객정보', '00 회사의 포렌직팀의 구성원의 인적정보'의 경우 00 회사가 제출한 그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라면

- 포렌직 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업무담당자, 사업계획 및 00 회사의 포렌직 팀의 구성원의 인적사항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 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비밀관리성 (판시내용): 00 회사가 이 사건의 각 정보가 저장된 파일·문서들을 그 팀 내에서 작성된 다른 파일·문서들과 구별해 특정한 장소에 비밀로 표시해 분류·관리하고,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 외에는 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며, 문서작성자 및 그 보관자에 대해 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관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 ◆ 甲이 기억하고 있는 위와 같은 정보들은 甲이 00회사 회사에서의 포렌직 서비스 업무 및 그이전의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학력과 경력에 따라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지식, 경험, 거래선과의 친분관계 등의 일종으로서 甲에게 <u>일신전속적</u>으로 귀속된 인격적성질의 지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당해 정보가 국내에서 사용된 바는 없다고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다면, '공연히 알려져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공지성에 관한 설명이다.
- ◆ 각 정보가 저장된 파일·문서들을 그 팀 내에서 작성된 다른 파일·문서들과 구별해 특정한 장소에 비밀로 표시해 분류·관리하고,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 외에는 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며, 문서작성자 및 그 보관자에 대해 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관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했다면 영업비밀의 요건 중 <u>비밀관리성</u>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 ◆ 업체가 공장 내에 별도의 연구소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그 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모든 직원들에게는 그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연구소장을 총책임자로 정하여 그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으로 비밀관리를 하여 왔다면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 ◆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3 호 (라)목에서 말하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 ◆ 사무처리의 근거, 신임관계의 발생근거
  - 1. 법령의 규정
  - 2. 계약 또는 법률행위
  - 3. 관습 또는 사무관리
- ◆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순수한 사실상의 <u>신임관계</u>가 인정된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 랜섬웨어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설명
  - 1. 랜섬웨어에 의한 기업공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기술정보 등 영업비밀 침해유형의 새로운 특징이다.

- 2. 랜섬웨어란 몸값을 의미하는 Ransom 과 Software 의 합성어로, 컴퓨터 사용자의 파일들을 암호화하여 금전(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를 말한다.
- 3. 감염경로는 회사 내 전산설비의 취약성과 관련하여, 주로 메일 내의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첨부파일의 개봉을 통하여 발생한다.
- 4.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관련 파일들이 암호화 되고, 일단 암호화 되면 랜섬웨어 자체를 제거해도 파일복원은 불가능하며, 요구된 금전을 지불한다 해도 복구된다는 보장은 없다.
- ◆ 랜섬웨어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비책
  - 1. 메일의 첨부파일이나 링크(URL) 등에 주의하여 의심스러운 것은 열지 않는다.
  - 2. 컴퓨터와 공유서버는 정기적으로 백업을 하되 백업으로부터 복원 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 3. os 나 사용소프트웨어는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 4.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바이러스를 정의하는 파일을 항시 최신 버전으로 유지한다.
- ◆ 해킹과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설명
  - 1. 2013 년 국가정보보호백서에 의하면 한국인터넷진흥에서 접수 및 처리된 민간분야 해킹사고는 2011 년에 1,169 건, 2012 년에 19,570 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 2. 2011 년 4월 경에는 현대캐피탈 고객 수십만 명의 신상정보를 빼낸 해커가 이메일로 억대의 돈을 요구하면서 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고객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있었다.
  - 3. 2011 년 4월 12일 오후 5시 쯤 농협의 뱅킹 관련 서버가 다운되면서 인터넷뱅킹, 폰뱅킹, 현금자동인출기(ATM) 등의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4. 해킹의 탐지와 행위자 규명이 곤란하고 완벽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 ◆ 해킹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절도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컴퓨터업무방해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위반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이 적용되어 처벌할 수 있다.
- ◆ 전자문서의 영업비밀성에 관한 설명
  - 1. 전자문서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고한 판례가 없다.
  - 2.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은 일방에 귀속한다는 약정의 취지는 개발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및 완성 또는 미완성 상태의 프로그램을 발주자가 아닌 타 업체에 납품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수주 업체에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3. 전자문서라고 하더라도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요건을 갖추면 영업비밀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 4. 발주자와 수주자 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와 달리,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어 개발용역이 진행되었다면, 사업제안서(아키텍처 정의서 포함) 및 그 연장선상에 있는

기획서 등의 개발문서가 모두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당사자의 의사로 보아야할 것이다.

- ◆ 영업비밀의 판단에 관한 판례의 태도
  - 1.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2.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 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3.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 4.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 3 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형법 제 355 조 2 항 (배임) <u>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u>란 양 당사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를 말하며 형법 제 355 조 2 항의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 ◆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원의 판시 내용 중 일부: "피고들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국 철강 회사에 누설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였고, 원고 회사가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정경쟁 방지법 제 11 조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회사에 부진정 연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 영업비밀보호법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영업비밀성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의 태도
  - 1.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특별한 고유성이나 진보성을 요한다고 볼 수 없다.
  - 2. 비공지성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면 족하다.
  -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영업비밀성이 인정될 수 있다.

- 4.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 ◆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 1. 미국 판례에 의해 대두되었으며 기존의 손해배상 외에 추가적으로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으로 가해자(특히 거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 2. BC 1750 년경의 함무라비법전과 BC 1400 년경의 히타이트법전, 모세율법의 헤브라이법전 등 고대법(古代法)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게 하는 배수적 손해보상(multiple damages)이 규정되어 있다.
  - 3. 대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로는 연방대법원이 2009 년 필립 모리스 담배회사에 대해 7950 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 4. 영업비밀 보호법 개정안(2019. 7. 4. 시행)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 14 조의 2 제 6 항, 제 7 항)
- ◆ 제 217 조의 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①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 ◆ 부정경쟁방지법 제 14 조의 2 제 6 항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11 조에도 불구하고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 영업비밀보호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5. 침해행위의 기간 횟수 등
  -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 저작권법 : 제 1 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문학작품이나 음악곡, 미술작품 또는 학술논문과 같은 저작물을 만들어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공중송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u>저작권</u>이라 한다.
- ◆ 지적재산권에 관한 설명
  - 1. 지적재산권은 지적 활동의 결과물로 생산되는 아이디어 또는 표현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 2. 그 권리의 대상 자체가 무형의 지적 생산물이라는 점에서 무체재산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3. 저작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다.
- 4.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특허침해로 인한 분쟁 및 구제의 내용
  - 1. 특허권, 상표권 등 침해죄로 징역 및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2. 특허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다.
  - 3. 특허권, 상표권이 없더라도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영업비밀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 4. 특허권 침해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 민사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 영업비밀과 특허에 관한 내용
  - 1.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자연법칙, 원리, 기술에 관한 것이 보호대상)을 말한다.
  - 2. 기술적 노하우도 특허 가능하나 판매정보, 고객리스트 등과 같은 영업적 정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 3. 영업비밀은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신규성이 없어도 가능하다.
  - 4. 영업비밀은 비공개를 전제로 영업비밀보유자가 비밀로서 계속 관리할 경우 영구히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지만, 타인이 동일한 기술을 정당하게 취득 또는 개발하여 사용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없고, 타인이 특허권을 획득할 경우 영업비밀보유자는 사용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다.
- ♦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차이점
  - 1.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객체는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며, 기술정보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된다.
  - 2. 산업기술보호법의보호객체는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로 기술상의 정보만을 말한다.
  - 3.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의 침해태양으로 국내에서 "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 3 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로 양분하고 있다.
  - 4. 산업기술보호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동법 제 14 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를 처벌하거나 단순히 동법 제 14 조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 ◆ 영업비밀보호법의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 1. 침해금지청구권(동법 제 10 조)
  - 2. 손해배상청구권(동법 제 11 조)
  - 3. 신용회복청구권(동법 제 12 조)
- ◆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설문이다. 이로 인하여 산업기술보호법의 핵심규정이 개정되었는데, 법령 등이 위반됨을 뜻하는 단어로서 헌법 제 107 조에 규정된 것을 위헌이라 한다.
-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고시·공고의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여 그 문언만으로는 그 법령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하는 지정 또는 고시·공고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라는

추상적인 내용만을 알 수 있을 뿐 해당되는 법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정 또는 고시·공고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인지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그 해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 법률조항이 규정형식의 불명확성 때문에 '적절한 고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수범자가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없게 하고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